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

동의연월일: 2014년 12월 18일

동 의 자: 윤은희 의원

찬 성 자: 정영수 의원

주 문

-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함.

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.

의안전문: 붙임

